건릉 봉안 서책과 규장각의 역할

조 계 영*

1. 머리말
2. 「발인반차도」의 채여와 「進發班次圖」의 書冊架子
3. 「退壙排設圖」와 규장각의 灰函 제작
4. 규장각의 서책 편찬과 건릉 봉안건의 특징
5. 19세기 왕릉 봉안 서책과 규장각의 전례
6. 맺음말

초록: 조선 후기의 왕릉에는 부장품의 하나로 서책을 봉안한 전례가 계승되었다. 특히 원릉에 봉안한 서책은 정조가 장황과 발인반차의 御製채여까지 결정했다. 국장도감과 산릉도감은 왕릉에 서책을 봉안하기 위해 필요한 궤와 石函을 제작했다.

본 논문은 건릉에 서책을 봉안하는 과정에서 규장각이 담당한 역할을 규명했다. 1776년에 정조는 어제의 편찬과 봉안을 주관하는 규장각을 건립했다. 정조의 승하 후 규장각은 건릉에 봉안할 서책을 마련하고 灰函을 제작했다.

건릉 이전의 봉안 서책은 국장도감에서 발인할 때 채여에 싣고 산릉으로 옮겼는데, 건릉에서는 규장각의 검서관이 架子에 싣고 발인 전에 능소로 운반했다. 건릉에는 정조가 생전에 정한 『三經四書大全』을 비롯해 『弘齋全書』와 『四部手圈』을 봉안했다. 19세기의 왕릉에는 건릉이 전례가 되어 규장각이 봉안할 어제를 주관했다.

핵심어 : 건릉, 봉안, 규장각, 『삼경사서대전』, 『홍재전서』, 『사부수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1800년 6월 28일에 승하한 정조의 왕릉은 현륭원의 제2청룡 밖에 위치한 옛 講武堂 터 뒤에 조성한 健陵이다.[1] 정조는 이해 1월 17일에 현륭원에 행차했을 때 齋室 밖의 강무당 옛터를 확인했고, 軍餉庫와 武庫 등의 옛터를 후세가 알도록 표석을 세우라고 명했었다.[2] 국장도감은 11월 3일에 창경궁 歡慶殿에 마련한 殯殿에 봉안했던 정조의 재궁을 산릉으로 향하는 발인을 거행했다. 11월 6일에 재궁을 玄宮에 내리고 이어서 明器와 服玩 등의 부장품을 진설했다.

정조의 비 효의왕후가 1821년 3월 9일에 승하하자, 영돈녕부사 김조순이 상소를 올려 정조의 건릉을 옮겨 효의왕후와 合祔할 것을 요청했다. 건릉을 옮길 장소로 생전에 정조가 현륭원을 가까이하려 했던 뜻과도 부합하는 화성의 옛 향교터로 결정했다.[3] 현륭원을 중심으로 1800년 국장 때에 동쪽 언덕에 조성했던 건릉을 1821년에 서쪽 언덕으로 옮긴 것이다.[4] 『健陵誌』의 「陵園寢內禁養全圖」에는 主山인 花山의 맥을 타고 현륭원과 건릉을 '癸坐 園寢'과 '子坐 陵寢'으로 표기하고 건릉의 초장지를 '舊陵基'로 표기했다.[5]

정조의 국장은 승하와 발인 및 건릉의 조성과 祔廟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한 바 있다.[6]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국장의 매뉴얼과 생소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遷陵에 대해서는 왕권 확립과 정치 세력간의 갈등으로 살펴본 연구와 제도사의 측면에서 왕릉을 고찰한 연구에 집중되었다.[7] 건릉의 초

---

1) 『健陵山陵都監儀軌』(奎13640) 上, "嘉慶五年庚申六月二十八日酉時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 昇遐于昌慶宮之迎春軒 七月初六日 賓廳會議 定陵號曰健陵 同月十五日 封標於水原府花山下 顯隆園第二靑龍外 舊講武堂基後 是年正月行幸時 命豎標石矣 至是封標於其處"

2) 『승정원일기』 정조 24년 1월 17일 경오.

3) 『순조실록』 순조 21년 4월 21일 신축.

4) 건릉의 현재 위치는 융릉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이다.

5) 『健陵誌』(藏K2-4406)은 1879년에 南廷哲이 成均進士로서 健寢郎에 제수되어 편집한 4권 4책의 필사본이다. 장서각 편찬・김근호 역주, 2019 『譯註 健陵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6) 이현진, 2015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장지는 2011-2012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해 凸자형 매장주체부의 구조와 규모가 밝혀지고, 출토유물로 명기와 坐向表石 등을 수습했다.[8)]

영조의 왕릉인 원릉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왕릉에 봉안한 서책을 고찰한 선행연구는 부장품으로 退壙에 봉안한 遺書를 조명하고 17-18세기의 7기 왕릉에서 그 존재를 확인했다.[9)] 정조는 『국조상례보편』에 의거해 영조의 국장을 거행했으며, 원릉에 봉안할 서책을 선택하고 장황까지 주관했다. 특히 발인 행차에서 다른 부장품과 구별해 羽葆 앞에 어제채여를 배치한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그렇다면 정조가 승하한 뒤 조성된 건릉에는 어떤 서책을 봉안했으며 「발인반차도」에는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본 논문은 『正祖國葬都監儀軌』(奎13634)·『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奎13637)·『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奎13642)·『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奎13659)를 중심으로 건릉에 봉안한 서책과 규장각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2장은 국장도감의 「발인반차도」에 없었던 서책채여와 천봉도감의 「진발반차도」에 나타난 서책가자를 통해 규장각의 숨겨진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3장은 산릉도감의 「퇴광배설도」에 기록한 서책과 규장각에서 제작한 회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1776년에 정조는 어제의 편찬과 봉안을 담당할 규장각을 세웠고 1784년에 외규장각을 포함한 직제와 의례를 완비했다. 규장각은 어제 외에도 御定書와 命撰書를 편찬하고 간행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4장은 규장각이 건릉에 봉안한 서책을 마련한 과정과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5장은 건릉의 사례가 19세기 왕릉 봉안 서책을 규장각이 담당한 계기가 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

7) 이희중, 2001 「17,8세기 서울 주변 왕등의 축조, 관리 및 천릉 논의」, 『서울학연구』 17; 신재훈, 2011 「조선 전기 遷陵의 과정과 정치적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58; 김충현, 2012 「효종(孝宗) 영릉(寧陵)의 조성과 능제(陵制)의 변화」, 『역사문화논총』 7; 정해득, 2013 『조선 왕릉제도 연구』, 신구문화사; 신병주, 2017 『조선왕실의 왕릉조성』, 세창출판사.

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傳 정조대왕 초장지』. 1998년에 융릉과 건릉의 문화재구역의 동남편에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되면서 2005-2007년에 걸쳐 (재)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건릉 초장지가 확인되어 주변으로 문화재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과정에서 '전 정조대왕 초장지'에 대한 긴급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9) 조계영, 2019 「조선 후기의 왕릉 봉안 서책과 원릉의 특징」, 『한국문화』 85.

2. 「발인반차도」의 채여와 「進發班次圖」의 書冊架子

왕릉 부장품은 먼저 국장도감의 二房에서 만든 궤나 함에 담은 뒤, 산릉도감의 大浮石所에서 제작한 石函에 담아 퇴광에 배치했다. 따라서 왕릉 부장품은 산릉으로 향하는 발인행차의 채여와 퇴광에 배치한 석함에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국장의 발인행차를 그린 「發靷班次圖」는 『국장도감의궤』의 「一房儀軌」와 「二房儀軌」 사이에 수록되었고, 「退壙排設圖」는 『산릉도감의궤』의 「大浮石所儀軌」 '圖說'에 수록되어 있다.

1800년 11월 3일에 빈전에 봉안되어 있던 재궁을 받들고 장지로 향하는 발인이 거행되었다.[10] 정조 국장에서 발인 반차의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발인 행차에서 국왕의 거둥을 드러내는 길의장(B)과 생전에 받은 책보와 교명(C) 등은 국왕의 존재를 표상하며, 부장품 채여와 대여 등의 흉의장(D)은 국왕의 승하를 표상하는 것으로 공존했다.[11]

영조가 생전에 받은 책보 등을 실은 요여가 6부였던 것에 비해 정조는 요여와 채여 각 1부만 있었다. 정조는 1759년에 왕세손으로 책봉되면서 교명과 죽책·옥인을 받았는데, 강화부에 외규장각을 설립한 후 처음으로 1782년 4월 2일에 정칸 奉安欌에 교명과 죽책을 봉안했었다.[12] 7월 20일에 우의정 서용보가 외규장각에 있는 왕세손 교명과 죽책을 빈전에 봉안해야 하니 규장각 각신을 내려 보내 가져오기를 아뢰었다.[13] 외규장각에 보존했던 왕실 기록물인 책보를 정조가 승하함으로써, 7월 25일에 규장각 원임직각 金勉柱가 빈전에 봉안하기 위해 외규장각에서 봉출해왔다.[14]

---

10) 정조 국장의 발인에서 장례까지 거행되었던 의례의 절차는 이현진, 앞의 책, 152-217면 참조.

11) 이욱, 2017 「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 애통·존숭·기억의 의례화」, 민속원, 152면.

12) 조계영, 2015 「외규장각의 冊寶 봉안과 봉출에 관한 고찰」, 『古文書硏究』 46, 240-241면.

13)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上, 「承傳」, "庚申七月二十日 藥房入診 領左相閣臣諸承旨入侍時 右議政徐龍輔所啓 大行大王 冊命印寶 當爲奉安於殯殿 而春邸時冊印敎命 前已藏奔于江都外奎章閣 下送閣臣 卽爲陪來爲宜 故敢此仰達矣 上曰依爲之"

1776년 2월에 대리청정 중이던 정조는『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임오화변에 대해 상소를 올렸다. 정조의 효심에 감동한 영조는 왕세손에게 銀印과 諭書를 내렸다. 이 은인과 유서는 영조의 명에 따라 정조가 거둥할 때에 항상 앞에 배치했기 때문에 외규장각에 봉안되지 않았다.[15]

〈1800년 정조 국장 발인 반차의 구성〉
A [導駕 + 前射隊・左廂軍] + B [大駕儀仗 + 平轎子 + 副輦] + C [前部鼓吹 + 敎命竹册諭書腰轝 + 玉印銀印彩轝 + 謚册腰轝 + 謚寶腰轝 + 神帛腰轝 + 香亭子 + 神輦 + 後部鼓吹] + D [副葬品彩輿 7部 + 架子 1部 + 肩轝 + 羽葆 + 香亭子 + 銘旌 + 大轝] + E [哭宮人 + 守陵官・侍陵官 + 都監堂郎 + 東班・西班 + 後射隊・右廂軍]

정조가 주관했던 원릉의 발인 행렬에서 부장품 채여와 구별하여 흉의장(D)의 우보 앞에 배치했던 어제 채여는, 건릉의 발인 행렬에서는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건릉의 부장품에는 봉안 서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 의문의 실마리를『정조국장도감의궤』에서부터 풀어가고자 한다.

국장도감의 一房에서는 二房과 三房에서 마련하는 명기와 복완・애책 등의 수효에 따라 발인 반차에 필요한 요여와 채여를 제작했다. 부장품을 운반하는 채여와 요여는 일방에서 만들어 제공하지만, 부장품을 담는 궤와 진설하는 배안상은 해당 방에서 만들어 대령했다.[16]「일방의궤」에 의하면 부장품을 싣기 위해 제작한 채여는 10부이며 가자는 2부였다.[17] 이 중에는 지석을 실을 채여 2부와 御製를 실을 채여 1부가 있었으나,「발인반차도」에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다. 어제 채여 1

14)「외규장각형지안」(奎9139), '當宁己卯年 王世孫册封時 敎命一 竹册一 庚申七月二十五 原任直閣金勉柱 大行大王殯殿奉安次奉來'

15) 조계영, 2015 앞의 논문, 258면.

16)『정조국장도감의궤』「일방의궤」, 稟目秩 "至於櫝排案床段 不爲擧行是如乎 分付二三房 預爲造作待令何如"

17) 위의 책, '造作秩', "○ 彩轝十部 一部贈玉帛所盛 一部哀册所盛 二部誌石所盛 **一部**御製所盛今番造作不用 一部筲櫝所盛 一部磁器櫝所盛 一部樂器櫝所盛 一部籩豆櫝所盛 一部服玩函所盛 以上馬木具 ○ 架子二部 一部遺衣稱所盛 一部几杖所盛"

부의 각주에는 '이번에 만들었으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발인반차도」에서 부장품 채여의 앞에는 排案床을 든 擧案者가 인도하고 뒤로는 네 명의 差備官이 말을 타고 따르는 가마 행렬은 다음과 같다.

〈정조 국장 부장품 채여와 架子〉
【①筲櫝彩轝 + ②磁器櫝彩轝 + ③樂器櫝·標信櫝彩轝 + ④籩豆櫝·硯匣函彩轝 + ⑤遺衣稱架子 + ⑥服玩函·几杖櫝彩轝 + ⑦贈玉·贈帛·柩衣·銘旌函彩轝 + ⑧哀册彩轝】

건릉의 부장품 가마 행렬을 영조의 왕릉인 원릉의 부장품 가마 행렬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원릉에서는 궤장만을 실은 별도의 궤장 架子가 있었는데, 건릉은 ⑥복완함 채여에 궤장을 담은 궤를 함께 실었다. 이에 따라 원릉에서 복완함 채여에 함께 실었던 표신궤를 건릉에서는 ③악기궤 채여에 싣게 되었다. 사실 일방에서 유의칭과 궤장을 담기 위해 가자 2부를 제작했으나 발인 행렬에서는 궤장을 가자에 싣지 않고 복완함 채여에 실었다.

원릉에서 변두궤 채여에 실었던 구의함은 건릉에서는 ⑦증옥·증백함 채여에 명정함과 함께 실었다. 건릉의 ④변두궤 채여에는 구의함 대신 硯匣函을 함께 실었다. 조선후기의 원릉까지의 부장품에서 없었던 연갑은 건릉에서 처음 등장했다. 인조의 장릉과 효종의 영릉에 부장한 서책궤는 발인 행렬에서 악기궤 채여에 실려 함께 운반되었다. 건릉에서는 ③악기궤 채여와 다른 부장품의 채여 어디에도 어제를 함께 싣지 않았다. 그렇다면 건릉에는 봉안 서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1800년 11월에 조성된 건릉은 1821년 3월에 정조의 비 孝懿王后의 승하로 인해 왕릉을 옮기게 되었는데 이를 遷陵 또는 遷奉이라고 한다. 정조와 효의왕후의 왕릉은 英陵(세종과 소헌왕후의 능)과 長陵(인조와 인열왕후의 능)의 전례에 따라 合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821년 9월 6일에 건릉의 현궁을 열고 재궁을 꺼내 정자각으로 옮겨 빈소를 차렸다. 9월 12일에 현륭원의 동강에서 서강으로 이동하는 행렬은 導駕와 廂軍·의장·고취 등이 생략되었고 배행하는 관원들은 걸어서 갔다.

이때의 행렬을 그린 것이 「進發班次圖」이며, 禁府都事 2인이 앞에서 인도하고 중앙에 평교자가 뒤따랐다. 평교자의 양측으로는 朱杖司禁 6인씩 12인이 시위했다. 정조 국장의 「발인반차도」와 가장 큰 차이는 1630년에 선조의 목릉을 천봉할 때의 전례에 따라 大轝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1821년 건릉 천봉 반차의 구성〉
A [平轎子 + 空輦 + 香亭子 + 紅陽繖 + 紅日傘·御馬 + 紙牌腰轝 + 靑扇] + B [副葬品 彩輿 7部·架子 4部] + C [羽葆 + 香亭子 + 銘旌 + 肩轝] + D [內寺班 + 守陵官·侍陵官 + 都監堂郞]

「진발반차도」의 부장품 채여에는 충찬위 2인과 거안자 2인, 차비관 2인이 횡렬로 나란히 걸어서 뒤따른 행렬은 다음과 같다. 부장품 중에서 ③遺衣稱 架子와 ④服玩函·几杖櫝 彩轝, ⑧哀册彩轝에는 내시 1인이 뒤따르고 있어 다른 부장품과 차별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건릉에 봉안했던 서책을 실은 ㉠·㉡·㉢의 書册架子 3坐에는 각기 擧案者 2인과 서책 차비관 10인이 뒤따랐다. 1800년의 국장에서 건릉에 봉안했던 서책은 1821년에 건릉을 천봉할 때의 「진발반차도」에서 그 존재를 드러냈다. 건릉 봉안 서책을 架子 3좌에 실은 것으로 보아, 어제 채여 1부에 실은 원릉 봉안 서책보다 많은 분량임을 알 수 있다.

천봉할 때에 봉안 서책을 가자에 실어 운반한 것은 국장 때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18] 가자는 일방에서 만들었으며 서책 궤함의 무게를 짐작할 수 없으므로 가자 1좌를 별공작에서 만들어 예비하도록 했다. 또한 봉안 서책과 회함은 퇴광에서 습기가 스며들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퇴광에서 꺼내 운반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사방을 판재로 보호해 운반했다.[19]

---

18)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이방의궤」, '稟目秩', "同日 庚申謄錄中 有載運架子之語 今亦依此擧行 而雖無已行之例 此與遺衣稱架子及各樣彩輿 似無異同 御製函書册櫝 所載架子三坐 亦令一房各 別精造等待事分付 而壙中前排之書册櫝函 輕重與否 有難遙度 預備架子一坐 亦令別工作 造作待令之意 一體捧甘爲乎旀 架子叅只白木四疋進排事 亦爲捧甘 何如 堂上手決內 依灰石函置之 戶曹 工曹"

〈건릉 천봉 부장품 채여와 가자〉
【①筲櫝彩轝 + ②籩豆櫝·硯匣函彩轝 + ㉠書册架子 + ㉡書册架子 + ㉢書册架子 + ③遺衣稱架子 + ④服玩函·几杖櫝彩轝 + ⑤磁器櫝彩轝 + ⑥標信櫝·樂器櫝彩轝 + ⑦贈玉·贈帛櫝·柩衣·銘旌函彩轝 + ⑧哀册彩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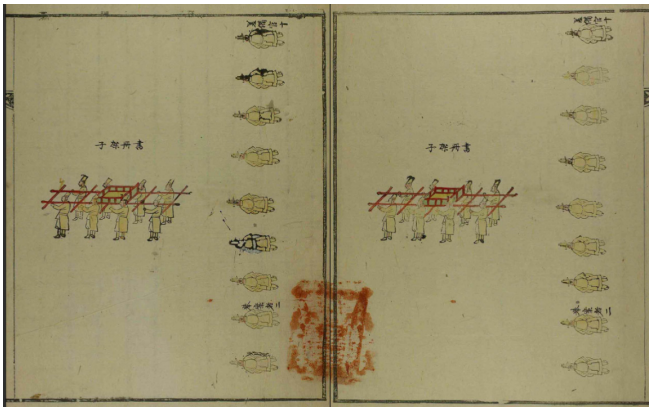

〈그림 1〉 건릉 천봉 「진발반차도」의 書册架子

이렇게 존재했던 봉안 서책을 「발인반차도」에서 볼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 배경은 10월에 이조에서 국장도감에 올린 牒呈을 통해 알 수 있다.[20] 이조에서 발인할 때에 필요한 차비관을 추가로 마련하려는 명단을 국장도감에 첩정으로 보고했다. 그 중 御製櫝의 차비는 檢書官이 내각에서 거행해 기일 전에 능소로 바로 나아간다고 알렸다. 규장각 검서관이 담당해 발인 전에 능소에 도착했기 때문에 「발인반차도」에 봉안 서책은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능소에 도착한 어제는 香大

19) 위의 책, "辛巳九月初十日 壙中前排 御製書册灰函十部 奉出後 各別淨洗 仍舊件移安於新陵退壙之意 今已停當是在果 灰函盡爲沈濕 而奉審其底地之處 則着漆剝落 似有不堅之慮 書册亦未免浸潤 高厚函蓋舛戾 終不適中出納行路之際 不無隨落破傷之患 以前磨鍊櫝函材木之帶來者 裁折作板貼付上下左右 分付濟用監 各以白木十尺 上下維結 俾無至撓動之地 何如堂上手決內 依濟用監"

20) 『정조국장도감의궤』, 「承傳」, 庚申十月日 吏曹爲牒報事, "今此因山敎是時 差備官加磨鍊後錄牒報爲去乎 相考施行爲只爲 後 御製櫝差備 檢書官 自內閣擧行 前期直詣陵所"

廳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1] 그렇다면 건릉에는 어떤 책을 봉안했는지 「퇴광배설도」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3. 「退壙排設圖」와 규장각의 灰函 제작

산릉도감의 대부석소에서는 국장도감의 이방에서 만든 부장품의 궤함에 맞추어 석함을 제작했다. 따라서 대부석소는 석함 제작에 앞서 부장품 궤함의 종류와 크기에 대한 정보를 국장도감에 문의한 후 작업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부장품의 궤함과 석함은 현궁에 재궁을 안치하는 날에 비로소 합체된다.

국장도감의 낭청이 부장품 궤함을 옹가 안으로 배진하면 正布로 만든 옷과 수건, 버선을 갖춘 대부석소의 석수가 석함을 퇴광에 배설한다. 국장도감의 낭청은 석수가 석함 안에 담도록 차례대로 함궤를 배진한다. 부장품의 배치를 마친 뒤 三物所에서 먼저 水灰로 빈 공간을 채우면 이어 三物灰를 땅과 같은 위치까지 다져 쌓는다.[22]

건릉의 「퇴광배설도」에는 발인반차에 등장했던 부장품과 함께 經書函 셋과 全書函 여섯, 手圈函 하나가 배치되었다.[23] 이를 통해 건릉에 봉안한 서책은 『경서』와 『전서』 그리고 『수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퇴광배설도」에 다음

---

21) 국장도감에서 복완과 명기의 궤함이 산릉에 도착하면, 궤함 안에 八穀 등을 넣기 위해 어디에 봉안할 지를 통지해달라고 산릉도감에 요청하였다. 산릉도감은 향대청에 봉안할 것이라고 관문으로 알렸다. 『정조국장도감의궤』 「이방의궤」, '稟目秩', "一 本房次知 服玩明器 各樣櫃函 到山陵 八穀及鹿醢 醢醢 淸醴酒 薑桂屑等 入盛於各其櫃函內 器皿中是如乎 勿論經宿與否 奉安處 例自山陵都監 某齋室香大廳定之之意 預先通知是置 趁早移文 俾無臨時窘急之弊 何如 堂上手決依"

22)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奎13586)下, 「大浮石所儀軌」, '稟目秩', "一 各樣函櫃 國葬都監郎廳 陪進於瓮家內 而本所石手具正布衣布巾布襪 石函排設於退壙中 則國葬都監郎廳 次第陪進 使之盛於石函中 畢排設後 三物所 先以水灰塡實之 仍以三物灰 杵築至地平"

23)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大浮石所儀軌」, 圖說, '退壙排設圖', "經書一二三 全書一二三四五六 手圈全一匣"

면에 부장품을 넣을 각양 석함의 크기를 수록했는데 여기에 봉안 서책의 석함은 빠져 있다. 이 사실과 「발인반차도」의 부장품 채여에 봉안 서책이 없었던 것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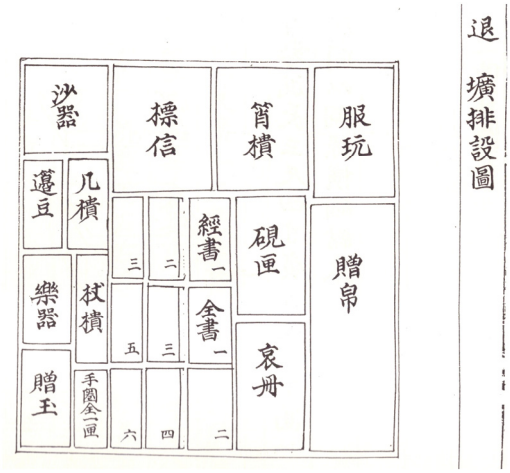

〈그림 2〉「퇴광배설도」의 건릉 봉안 서책

정조는 1776년에 謨訓과 御眞을 봉안하기 위해 규장각을 건립했고 규장각 관원의 가장 큰 직무는 어제를 編次하는 것이다.[24] 1800년 8월 22일에 국장도감은 퇴광에 봉안할 어제 책에 필요한 물품을 규장각에서 맡아 미리 준비하도록 아뢰었다.[25] 규장각에서 마련해야할 물품에는 어제의 冊衣를 장황할 비단과 어제를 싸는 보자기에 들어갈 비단, 어제의 冊匣과 궤 등이 있다. 규장각 건립 이전에는 국장도감에서 마련한 물품을 건릉에서는 어제의 봉안을 주관하는 규장각에 위임한 것이다.

산릉도감의 대부석소에서 부장품의 석함을 제작하기 위해서 부장품의 종류와

24) 『奎章閣志』(奎82) 卷一, 編次第四 "閣之設 爲奉安也 而官有人 職有務 則編次聖製 又其務之大者 故編次之事實儀節 竝敍于此"

25) 『정조국장도감의궤』, 「承傳」, 同日, "都監郎廳以總護使意啓曰 退壙奉安御製冊 粧衣裹袱緞品 大小冊匣及櫃子等節 令內閣預爲稟旨詳細 知委擧行 何如 傳曰允"

수효, 크기를 미리 알려달라고 국장도감에 關文을 보냈다.[26] 국장도감은 이에 대해 회답하는 관문을 산릉도감에 보냈는데 이 관문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1776년 정조의 전교에 근거하여 遺衣函은 퇴광에 묻는 함이 아니기 때문에 석함을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내에서 함에 담아 내주는 유의는 선왕의 용포로 재궁을 현궁에 내린 다음 재궁 위에 덮었다. 영조의 국장에서 유의함은 列朝에서 전해오는 물건이므로 반우일에 내입하라는 정조의 전교대로 낭청이 승정원에 배진해 내입했다.[27] 〈그림 2〉의 「퇴광배설도」에서도 유의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御製函에 대한 언급이다. 국장도감은 건릉의 어제함은 규장각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원릉에서와 같이 御筆을 어제함에 함께 넣는지의 여부는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28] 건릉 이전에는 국장도감에서 퇴광 봉안 서책의 궤를 제작하면 산릉도감은 석함을 만들었던 전례에서 벗어난 첫 사례이다. 그렇다면 산릉도감에서 만들었던 석함도 규장각에서 제작한 것일까. 이 의문은 국장도감의 이방에서 제작한 궤함 목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국장도감의 이방에서 부장품을 담는 궤함을 櫝函秩에 제시했는데 여기에 御製櫝를 수록했다.[29] 어제궤는 『어제』 120책을 담은 6함, 『手卷』 12책을 담은 1함, 새로 간행한 『삼경사서』 50책을 담은 3함으로 모두 10함이었다. 건릉에 봉안하는 3

---

26)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大浮石所儀軌」, '移文', "國葬都監了 爲相考事"

27) 조계영, 2019 앞의 논문, 136면.

28) 『정조국장도감의궤』, 「이방의궤」, 移關秩, 庚申月日 山陵都監了, "爲相考事 所送石函見樣或慮有差誤之慮是如 更關是置有亦 後錄各樣櫝函尺數相準則 一一相合是旀 遺衣函 則丙申年傳曰 遺衣事曾已下敎 而該都監 尙不聞之云 今番依庚子丁丑例 勿造櫝子 發靷日 自內盛於函內出 則奉安于架子 到山陵下玄宮時 先安梓宮上 次覆樞衣 一依補編受敎擧行 所盛函 卽列朝相傳之物 事畢後內入事 分付敎是故 返虞日 郎廳一員 陪進政院是如乎 遺衣函 旣非退壙埋安之函 則石函造成 非所可論是旀 至於御製函 今番段 自內閣專當擧行 則御筆同入與否 非本都監之所知 相考施行向事'

29) 위의 책, '櫝函秩', "御製櫝 御製六函 共一百二十册 手圈全函 共十二册 新印三經四書三函 共五十册 分盛于灰函十部 每部石灰四十三斗 白紙三卷十張 法油五斗 三物均搗作匣 作蓋片覆之 內外黑漆 匣面以倭朱紅書册名 ○今番則 自內閣造作"

건의 서책을 어제로 통칭했음을 알 수 있다. 3건 182책의 봉안 서책을 灰函 10部에 나누어 담았는데 정조 국장에서는 내각에서 이 회함을 제작했다. 하나의 회함은 石灰 43斗와 白紙 70張, 法油 5斗가 들어가며 이를 고루 찧어 册匣을 만들고 뚜껑도 만들어 덮었다. 회함의 안과 밖은 黑眞漆을 하고 册匣에는 倭朱紅으로 서책의 이름과 함의 순서를 적었다. 건릉 이전에는 이방에서 제작한 궤에 봉안 서책을 담았는데 건릉에서는 규장각에서 제작한 회함에 담은 것이다.

1821년 3월에 효의왕후가 승하하자 정조의 건릉을 옮겨 효의왕후의 왕릉과 합부했다. 5월 24일에 천릉도감의 총호사는 정조 국장시의 부장품을 천릉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아뢰었다. 총호사는 천릉의 전례로 1630년에 선조의 목릉과 1731년 인조의 장릉을 옮길 때의 부장품 사례를 들었다.[30]

1630년에 목릉을 천봉할 때에 도감에서 舊件 서책이 온전하면 그대로 쓰고, 만일 훼손되어 무슨 책인지 알 수 없다면 천릉은 국장과는 다른 것이니 퇴광에 봉안하지 않더라도 미안한 일이 아닐 듯하다고 草記했다. 1731년에 장릉을 천봉할 때에는 부장품에 대해 쓸 만한 것이 있으면 천릉에서 사용하고, 쓸 수 없는 부장품은 굳이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하교했다. 건릉을 천봉할 때에 부장품도 이에 따라 거행하라고 하교했다.

건릉을 조성할 때에 규장각에서 봉안 서책을 싸는 보자기는 물론 회함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의궤에 기록하지 않아 천봉도감은 外櫝의 유무와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천봉하기 위해 현궁에서 재궁을 꺼낼 때에 비로소 국장 때에 배열한 회함과 서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봉도감에서는 만약을 대비해 제작하려고 소용물자를 준비했었다. 그러나 건릉에 봉안한 서책은 습기는 있었으나 특별히 훼손된 것이 없었고 회함도 흠이 없어 그대로 쓰기로 했다.[31]

---

30) 『승정원일기』 순조 21년 5월 24일 계유, "洪時濟 以遷陵都監摠護使意啓曰 庚申國葬時 硯匣函硯石筆墨具內下 御製册手圈新印三經四書合十函 內外裹褓灰函具 自內閣擧行 而謹考謄錄 則辛亥遷奉時 退壙中硯匣筆墨等物 因摠護使所啓 有舊件可用則用之 不然則不必新造之下敎 庚午遷奉時 都監以舊件書册 若皆完具 則當件用之 如或毁傷 則不知當用某某册 而且與初喪有異 雖勿用 似無未安之事 草記蒙允矣 今番則何以爲之 敢稟 傳曰 依口傳下敎擧行"

31) 『健陵遷奉都監儀軌』 「二房儀軌」, '凶儀仗秩', 御製書册, "庚申則幷具灰函 自內措備以下 外

천봉도감은 의궤의 기록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후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함과 책의 크기를 기록했다.[32] 봉안 서책은 규장각에서 제작한 회함에 담아 그대로 퇴광에 배치했기 때문에 석함을 제작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유로 봉안 서책은 산릉도감의 「퇴광배설도」에는 그려졌으나 석함 목록에는 없었던 것이다. 천봉시의 「대왕퇴광배설도」를 국장의 「퇴광배설도」와 대조하면 회함의 종류는 일치하며 배치는 약간의 변동이 있다.[33] 봉안 서책 외의 건릉의 부장품은 「발인반차도」와 「퇴광배설도」에서 알 수 있듯이 12부의 석함에 담겨 퇴광에 배치되었다. 오직 봉안 서책만을 회함에 담아 퇴광에 배치한 것은 이전과는 달라진 건릉의 특징이다.

천봉도감이 기술한 각양 석함의 크기에서 규장각이 제작한 御製所盛灰函을 알 수 있다. 책의 길이와 너비에 맞춰 만든 회함의 내부는 몇 개의 층계를 두어 회함이 엎어져도 책이 요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34] 의궤에 수록한 건릉 퇴광에 봉안한 서책과 회함의 크기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35] 건릉의 회함은 국장도감의

櫃有無 尺量幾許 未能料度 前排奉出後 出見樣造作次 所入物力 以至磨鍊矣 奉審其壙中 前排奉出者 則書册雖至渝濕 別無傷毁 所盛灰函 亦無欠傷 幷爲仍用事 啓稟 停當"

32) 위의 책, 御製書册, "○弘齋全書 共一百二十册 分盛六函 函長廣幷同 長一尺四寸 廣九寸五分 通蓋 高則第一第五函 幷一尺五分 第二函 爲一尺一寸五分 第三第四函 幷一尺一寸七分 第六函 爲一尺一寸二分 三禮手全函 函共十二册一函 函長一尺六寸五分 廣一尺一寸五分 通蓋高一尺一寸五分 新印三經四書 共五十册 分盛三函 函長廣幷同 長一尺五寸 廣一尺二分 通蓋 高則第一函 八寸五分 第二函一尺五分 第三函一尺四寸六分 函用禮器尺 册用周尺 弘齋全書册 長一尺一寸六分 廣一尺五分 三禮手圈册 長一尺八寸八分 廣一尺二寸 三經四書册長一尺七寸六分 廣一尺一寸三分 而函與册見樣之以不載庚申謄錄 今番擧行 未免眩惑 故雖非都監擧行之事 函與册樣 幷爲尺量書塡以備後考" 이 기록에 '사부수권'을 '삼례수권'으로 기술했으나 책의 크기는 동일하므로 〈표 1〉에 '사부수권'으로 지칭했다.

33) 『정조효의왕후건릉산릉도감의궤』(奎13664) 「대부석소의궤」, '대왕퇴광배설도'.

34)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이방의궤」, '凶儀仗秩', 御製書册, "○制度 則每部 石灰四十二斗 白紙三卷十張 法油五升 三物均搗作匣作蓋片 內面則依册長廣 有數分許層界 覆之不至撓動 內外黑眞漆 匣面以倭朱紅 只書册名及函次第 仍以此入排於退壙中 無石函等待之例"

35) 회함의 높이는 뚜껑까지 포함한 크기이다. 책은 周尺을 사용하였고, 함은 禮器尺을 사용하여 크기를 측정하였다. 周尺은 1尺이 20.7㎝이고, 禮器尺은 1尺이 27.474㎝로 환산된다. 환산한 값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입하고 그 이하는 버림 처리했다. 주척은 신주나 천문의기 등을 제작할 때 사용하고, 예기척은 왕실 기물과 제례에서 쓴다.

이방에서 만든 책궤와 산릉도감의 대부석소에서 만든 석함을 대체한 퇴광의 서책 보호용품이다.

〈표 1〉 건릉에 봉안한 서책과 회함의 크기

書名(책수)	책(㎝)		회함(㎝)		
	세로	가로	세로	가로	높이
弘齋全書(120책)	24.0	21.7	38.4	26.1	제1・제5함 28.8/ 제2함 31.5/ 제3・제4함 32.1/제6함 30.7
四部手卷(12책)	38.9	24.8	45.3	31.5	31.5
三經四書大全(50책)	36.4	22.7	41.2	28.0	제1함 23.3/ 제2함 28.8/ 제3함 40.1

천릉의 다른 사례로 1659년에 조성한 효종의 영릉을 들 수 있다. 영릉은 14년 뒤인 1673년에 천릉했는데, 이때의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奎13532)에서 영릉에 봉안한 서책을 찾을 수 있다.[36] 당시 총호사 우의정 김수흥 등은 연명해 올린 장계에서 부장품의 상태를 보고했다. 영릉에 부장한 서책은 『심경』 2책・『용비어천가』 4책・『서전대문』 2책・『사한일통』 10책・『시전대문』 1책이었다. 이 책들은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겨우 형체만 남아 있었기에 그대로 묻었다.

4. 규장각의 서책 편찬과 건릉 봉안건의 특징

본 논문의 앞장에서 「진발반차도」와 「퇴광배설도」를 통해 건릉 봉안 서책의 존재를 확인했다. 규장각은 건릉 봉안 서책을 회함에 담아 가자에 싣고 산릉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모두 주관했다.[37] 이 장에서는 발인 전에 마련되어 건릉에 봉안한

36) 조계영, 2019 앞의 논문, 140면.

37) 본 논문에서 어제의 편찬과 봉안을 담당하는 관서로서 지칭하는 규장각은 각신들이 근무하는 이문원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의 문헌에서는 이문원보다는 내각으로 기록했으며 현

『삼경사서대전』·『사부수권』·『홍재전서』의 판본을 규장각의 서책 편찬 업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조는 규장각을 비롯해 봉모당과 외규장각을 謨訓의 봉안처로 건립했다. 각신들의 근무처인 이문원은 直院으로 보통 내각이라고 호칭할 때는 이문원을 가리킨다. 서책의 인쇄를 담당했던 교서관은 규장각의 속사로 개편하고 외각으로 불렀다. 창덕궁 후원에 위치한 규장각과 2층의 주합루에는 정조의 어진과 어제 등을 봉안했다. 이문원의 각신은 어제를 繕寫한 분량이 卷帙을 이루면 비단 보자기로 싸서 길일을 택해 봉안했다. 선사한 어제를 봉안하는 櫥은 이문원과 후원의 규장각 그리고 대내 이렇게 세 곳에 있었다.[38]

1)『三經四書大全』50책

『삼경사서대전』은 「퇴광배설도」에 '經書一二三'으로 그려진 것처럼 50책을 세 개의 함에 담아 건릉에 봉안했다. 회함 하나에 17책 내외로 넣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표 1〉에서 보듯이 『삼경사서대전』을 담은 회함의 높이가 조금씩 차이난다. 『정조실록』에 의하면 1793년 초여름에 활자로 인출하기 시작한 『삼경사서대전』은 이듬해인 1794년 1월 24일에 작업이 마무리되어 교서관에서 진상했다.[39] 이날에 정조는 작업을 감독한 각신 서영보에게 말을 하사하고 내각과 외각의 관원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라고 명했다. 이어 서울과 지방의 閣館과 史庫, 태학·도산서원·석담서원·大老祠에 分藏하라고 했다.

『내각일력』에는 실록 기사보다 상세한 『삼경사서대전』의 작업 일정과 반사 대상이 수록되어 있다. 2월 16일에 교서관에서 새로 인출한 『삼경사서대전』을 장황해 진상했는데, 이 책은 1793년 4월 15일에 인출 작업을 시작해 이듬해인 1794년

전하는 『내각일력』은 이문원의 근무 일지에 해당한다.

38) 『奎章閣志』(奎82), 編次第四, 「奉藏」, "御製奉安櫥 一在摛文院 一在奎章閣 一在大內 御製繕寫後 裝卷成帙 裹以紅袱 入直閣臣 涓吉稟旨 奉安如儀"

39) 『정조실록』 정조 18년 1월 24일 임자, "校書館進活印三經四書 是書始印於癸丑初夏 至是工訖"

1월 24일에 마쳤다는 것이다.[40] 이날 정조는 『삼경사서대전』을 수장할 곳과 반사할 관원들의 명단을 비망기로 내렸다. 비망기에는 『삼경사서대전』을 인출한 冊紙의 명칭과 반사 건수가 병기되었다. 서책을 인출한 종이의 품질과 장황 재료에 따라 서책의 위격은 차별된다.

대내로 들이는 內入件은 10종의 책지로 인출한 36건이었다. 책지의 종류에 따른 건수(괄호)는 '粉唐紙(1) 簡壯紙(1) 冊壯紙(1) 稿精紙(1) 別白紙(2) 嶺壯紙(2) 別冊紙(1) 白綿紙(2) 禮單紙(5) 白紙(20)'이다. 西庫는 조선에서 간행한 서책을 수장하기 위해 창덕궁 후원에 세운 곳인데, 내입 건수보다 많은 47건을 수장했다. 서고에 수장한 책지의 종류와 건수는 '毛面紙(1) 冊壯紙(1) 水原行宮禮單紙(20) 白紙(25)'이다.

대내와 서고 외의 분상처에도 서책 인출지로 가장 많이 쓰는 백지로 찍어낸 『삼경사서대전』을 반사했다. 조선 후기에 국가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위해 건립한 네 곳의 외사고와 외규장각에도 『삼경사서대전』을 수장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태백산(禮單紙件)과 오대산사고(不剪紙件)의 분상건이 현전하며, 장서각에는 적상산사고(白紙件)의 분상건이 현전하는데 이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현전하는 외사고 분상건은 내사기가 있고 문헌에서 해당 건의 종이 명칭을 찾을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이들의 冊衣에는 오른쪽 상단에 '上之十八年癸丑新印'이라는 墨書가 있다. 계축은 1793년의 간지이며 정조가 즉위한 1776년부터 계산하면 즉위한 지 18년째가 된다. 1793년 4월부터 인출을 시작해 1794년 1월에 작업을 마친 『삼경사서대전』의 판식은 [四周單邊 半郭 24.9×17.0 cm, 有界, 10行18字 注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의 형태이다.

---

40) 『내각일력』 정조 18년, 2월 16일, "外閣新印三經四書 始役於癸丑四月十五日 畢印於今正月二十四日 至是日粧縞進上"

〈표 2〉 1793년 간행 『삼경사서대전』의 외사고 분상건

번호	서명	卷帙	태백산사고	오대산사고	적상산사고
㉠	周易大全	卷首, 24卷14册 : 圖	奎中327	奎中230	藏K1-21
㉡	書傳大全	卷首, 10卷10册 : 圖	奎中225	奎中443	藏K1-30
㉢	詩傳大全	卷首, 20卷10册 : 圖	奎中220	奎中248	·
㉣	大學章句大全	不分卷1册	奎中1911	奎中1903	藏K1-144
㉤	論語集註大全	20卷7册	奎中613	奎中740	藏K1-156
㉥	孟子集註大全	14卷7册	奎中844	·	藏K1-173
㉦	中庸章句大全	不分卷1册	奎中643	奎中2464	·

『삼경사서대전』의 인출을 완료한 1794년의 간지는 甲寅이었다. 정조는 이 갑인년을 세종이 1434년(세종 16)에 20여만 자를 주조한 甲寅字와 연관시켜 의미를 부여했다. 자신이 동궁으로 있을 때에 갑인자를 본으로 교서관에서 15만 자를 주조해 보관하게 했는데 이것이 壬辰字로 『三經四書正文』 등을 인출했다. 정조는 즉위년에 다시 갑인자를 본으로 15만 자를 關西에서 주조해 내각에 보관하게 했는데, 이것이 丁酉字로 『唐宋八子百選』 등을 인출했다.

정조는 자신이 두 번째로 주조한 정유자로 갑인년에 『삼경사서대전』을 인출한 것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 교서관에서 『삼경사서대전』을 바친 1월 24일에 정조는 『삼경사서대전』 한 본을 주합루에 보관하도록 명했다. 그리고 閣臣에게 "『삼경사서대전』을 잘 간수하라. 옛날 영릉에는 『심경』을 순장하고, 1776년에 영조의 원릉에는 『소학』을 순장했는데 나는 장차 그 뜻을 계승하려고 한다"고 밝혔다.[41] 『삼경사서대전』은 정조가 왕릉 봉안 서책의 전례를 계승해 자신의 체백과 함께 순장하려고 선택한 책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후 2월 16일에 내린 비망기에서 粉唐紙로 인출한 『삼경사서대전』을 주합루에 분상하라고 했다. 이 건이 정조가 규장각 각신에게 주합루에 한 건을 보관했다가 자신의 능에 순장해달라고 부탁한 『삼경사서대전』일 것이다.

41) 『정조실록』 정조 18년 1월 24일 임자, "命以三經四書一本 藏於宙合樓 謂閣臣曰 謹守之 昔寧陵以心經殉 丙申山陵殉小學 予蓋將繼述也"

2)『四部手圈』12책

『사부수권』은 12책을 한 함에 넣어 건릉의 퇴광에 봉안했다. 『사부수권』은 정조가 四部 즉 經部・史部・子部・集部에서 구절을 뽑고 批點과 圈點을 한 책이다.[42] 정조는 주자의 「藏書記」를 언급하면서 수십 권의 책을 머릿속에 간직하지 못한다면, 節錄해 열람에 편리하게 해 전체를 꿰뚫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자신이 특별히 아끼고 외우는 것으로는 부족해 문장을 선별했고 나아가 비점과 권점을 쳤다고 했다.[43] 이와 같이 『사부수권』은 전근대 학문의 총칭인 四部에서 정조에게 권점의 대상이 된 책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44]

『사부수권』의 절록 작업은 1797년 10월부터 시작해 1798년 10월까지 187일이 소요되었다. 1798년 10월 2일에 정조는 근래에 공무 이외에 經史를 수권하는 일로 밤샘을 하는 날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45] 정조는 이 책들의 좋은 구절에 청색의 비점과 붉은 색의 권점을 손수 쳤고, 내각의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베끼게 하여 30권으로 편찬했다. 1798년 11월 30일에 「三禮手圈」・「兩京手圈」・「五子手圈」・「陸稿手圈」・「八家手圈」으로 구성된 『四部手圈』이 완성되었다.[46] 이후 『사부수권』은 1801년 7월 19일에 『御定四部手圈』의 서명으로 내각에서 간인하여 반사했다.[47] 『사부수권』을 편찬하고 간인한 시기와 권질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

42) 『사부수권』의 구성과 의의에 대해서는 趙東永, 2010 「正祖의 『四部手圈』 小考」, 『韓國漢文學硏究』 45.

43) 『弘齋全書』 卷五十六 雜著三, 「求諸圈跋語於四閣相及文衡」.

44) 『사부수권』의 해제에서 정조의 학문 세계를 보여주는 『사부수권』이 건릉에 봉안된 사실을 각주에 언급한 바 있다. 정재훈, 2002 「『四部手圈』 해제」, 서울대학교규장각, 『사부수권』, 26면.

45) 『일성록』 정조 22년 10월 2일 임진.

46) 『정조실록』 정조 22년 11월 30일 기축.

47) 『순조실록』 순조 1년 7월 19일 계사; 『일성록』 순조 1년 7월 19일 계사, '因奎章閣監印閣臣 提學金祖享別單 敎以內下大鹿皮一令賜給 又因刊本校正 檢書官成海應別單 敎以相當職調用 又因印役時鑄字 監官柳明杓 別單 敎以前後效勞甚多 亦有昔日承傳善地瓜近邊將作窠口傳擬入事 分付該曹'

〈표 3〉『사부수권』의 편찬·간인 시기와 권질

순번	편찬·간인 시기(전거 문헌)	권질	비고
㉠	未詳	不分卷 13책	奎51
㉡	1798년 11월 30일(정조실록)	30권	·
㉢	1798년(홍재전서, 群書標記)	30권	·
㉣	1800년 11월 6일 하현궁(의궤)	12책	건릉 봉안건
㉤	1801년 7월 19일(순조실록)	25권 12책	奎1787 외 다수 현전

㉠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필사본으로 권차를 매기지 않고 13책으로 장책했다. 이 건의 册衣는 종이로 장황한 紙衣이며 책의 다음에는 앞뒤 空隔紙를 두었다. 본문 앞에 있는 '戊午課程日表'는 필사한 청묵 인찰선의 책지에 기록하였고, 본문은 인찰판으로 인출한 책지에 선사했다. 책지는 두껍고 매끄러운 종이로 상당한 무게의 서책이다.

㉡은 30권인데 이 권수는『홍재전서』의「군서표기」에서 기술한 ㉢의 권수 30권과 일치한다. ㉣은 건릉에 봉안한『사부수권』12책이다. 이 책수는 ㉤의 책판으로 인출한 25권 12책과 일치한다. 편찬과 간인 시기로 구분해보면 ㉠과 ㉡은 1798년 이후, ㉢과 ㉣은 2년 후인 1800년 이후로 나뉠 수 있다. ㉢의 권차와 ㉠의 책차 그리고 ㉤의 25권 12책의 권질을 대조하여 그 차이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사부수권』의 권차와 책차의 구성

순번	서명	篇題	㉢ 30권	㉠ 13책	㉤ 25권 12책	
			권차	책차	권차	책차
①	三禮手圈	儀禮	권1-2	책1	권1	책1
		周禮	권1-2	책2	권2	
		禮記	권1-2	책3	권3	책2
②	兩京手圈	史記	권1-2	책4	권4	책3

		漢書	권1	책5	권5	책4
		後漢書	권1		권6	
③	五子手圈	周子	권1	책6	권7	책5
		伯程子	권1		권8	
		叔程子	권1		권9	
		張子	권1		권10	
		朱子	권1-2/3-4/5-6	책7-9	권11-12/13-14/15-16	책6-8
④	陸稿手圈	陸宣公	권1-2	책10	권17	책9
⑤	八家手圈	韓昌黎	권1	책11	권18	책10
		柳柳州	권1		권19	
		王臨川	권1	책12	권20	책11
		歌陽廬陵	권1		권21	
		蘇老泉	권1		권22	
		蘇東坡	권1	책13	권23	책12
		蘇穎濱	권1		권24	
		曾南豐	권1		권25	

현전하는 ㉠과 ㉤의 수록 내용을 비교해보면 동일하다. 다만 〈표 4〉에서 보듯이 ㉠은 「의례」와 「주례」를 각기 1책으로 묶어 2책이 되었고 ㉤은 1책으로 장책한 것이 다르다. ㉢이 ㉤보다 5권이 더 많은 것은 「의례」와 「주례」 그리고 「예기」·「사기」·「육선공」을 각기 2권으로 편찬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건릉에 봉안한 『사부수권』 12책은 1801년에 간인한 25권 12책과 같은 권질로 구성된 필사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弘齋全書』 120책

건릉에 봉안한 정조의 어제는 『弘齋全書』 120책이므로 회함 6부에 20책씩 나누어 담았을 것이다. 규장각에서 정조의 어제를 편찬하거나 진상한 시기에 대한 문헌 기록과 해당 어제의 권질 구성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48] 여기에서 건릉 봉안건 120책과 판본의 선후 관계를 살펴보자.

〈표 5〉『홍재전서』의 편찬·진상 시기와 권질

순번	편찬·진상 시기(전거 문헌)	권책수	소장처	청구기호
㉠	未詳	初集 4권 2책 二集 61권 36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4465
㉡	1787년 8월 29일 진상(일성록)	60권 60책 2건	서울역사박물관	운911
㉢	1795년 7월 편찬(屐園遺稿)	三集 100권	·	·
㉣	1799년 12월 21일 진상(정조실록)	四集 191권 2건	·	·
㉤	1799년 겨울(홍재전서)	120권	·	·
㉥	1800년 11월 6일 하현궁	120책	건릉 봉안건	·
㉦	1801년 12월 11일(순조실록)	184권 10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藏K4-5699

㉠정조의 어제를 初集과 二集이라고 命名하게 된 내력은 각신 李敎信의 언급에서 알 수 있다. 이교신은 정조의 어제를 최초로 선사한 건은 初集과 二集, 三集으로 차례를 매겼으며, 1803년 12월 6일 당시에 해당 선사건이 내각에 있다고 아뢰었다.[49] 어제를『규장각지』의 회췌 규정에 따라 각 편으로 분류하여 선사했더니, 卷마다 공지를 남겨두는 폐단이 발생했다. 이에 정조는 초집과 이집, 삼집으로 칭하여 분류하지 않고 연달아 선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의 초집은 春邸錄이고, 이집은 1785년까지의 어제를 수록하고 있으며, 1787년에 진상한 어제의 편목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건은 무늬 없는 남색 비단의 책의와 백색 비단의 長題目으로 장황했다. 책의의 후배지로는 册紙와 같은 분당지를 사용하고 앞뒤에 空隔紙를 두었다. 책지는 두 장을 겹으로 하여 남색 인찰선을 직접 그려 선사했다. 이와 같은 장황은 봉안건이나

48) 〈표 5〉에서 제시하지 않은 장서각에 현전하는 三集과 四集의 선사본은 문헌 기록의 권책수와 일치하지 않아 제외했다. 이들 선사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문식, 2007『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55-77면 참조.

49)『일성록』순조 3년 12월 6일 정묘, '先朝 亦嘗洞燭此弊 故以初集二集三集爲稱 而初集則以初集中諸編會粹聯書 而二集三集亦然 每集各爲一集 各爲分類 俾無空紙續謄之弊 見今 先朝御製 正書內入件 則此是一統全書 爲會粹者 故無初集二集之名 而最初繕寫件 皆以初集二集爲第次 今在內閣矣'

어람건 서책에 해당한다.

㉡은 1787년 8월 29일에 규장각에서 어제 60권을 편찬하여 선사본 두 건을 희정당에서 정조에게 올린 것이다.[50] 어제 60권은 1776년부터 1785년까지의 어제를 수록했다.[51] 정조의 어제를 편찬한 규례는 영조가 10년에 한 번 편찬하였던 고사를 따른 것이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현전하는 『홍재전서』는 흥선대원군의 사저이자 고종의 잠저인 운현궁에 전래한 것이다. [52] 이 건은 실록 기사의 권질 구성과 목록이 일치해 정조에게 올린 선사본임을 알 수 있다. 한 권을 한 책으로 장책한 이 건은 비단으로 장황했고 여섯 면을 싸는 六合套에 10책씩 보관했다.

㉢은 1795년 7월에 규장각 직제학이 된 이만수가 정조의 명으로 『홍재전서』 3集 100권을 편찬하고 교열한 것이다. 이 사실은 이만수가 지은 「건릉행장」에 수록되어 있다.[53]

㉣은 1799년 12월 21일에 규장각에서 올린 어제 선사본으로, 세자로 있을 때부터 1799년까지의 어제를 30目 4集의 체재로 완성하였다. 이때의 어제는 191권인데 두 본을 선사하여 대내와 이문원에 봉안했다.[54]

㉤은 『홍재전서』에 수록된 1800년에 저술한 「弘于一人齋全書櫝銘」의 서문에서 언급한 사실이다. 정조는 종이로 제작한 册櫝에 이 명을 지었는데, 삼층으로 된 책장의 너비는 겨우 3책정도 넣을 수 있는 크기였으며 질박한 형태였다. 이 서문에서 정조는 작년 겨울에 각신들이 유별로 분류한 어제를 수정하여 120권으로 만들어 선사해 올렸다고 서술했다. 또한 규장각을 설립하고 관원을 두어 春邸 시절의 지은 것을 1집으로 명명하였고, 이후 2집과 3집·4집은 邸報와 사람들에게 반포된 것들을 유별로 모으고 부문을 나눈 것이라고 했다.

---

50) 위의 책, 정조 11년 8월 29일 갑자, '敎曰 御製詩文之十年一帙 旣有成命 今日告完 進呈六十卷 二件之校正 其勞不些 四年之內 仕日恰近千日 豈可無紀勞之擧'

51) 위의 책, 정조 11년 8월 26일 신유.

52) 박성호, 2009 「운현궁 도서의 형성 배경과 특징」, 『운형궁 생활유물Ⅶ』, 서울역사박물관, 14면; 신승운, 2001 「『홍재전서』와 『군서표기』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2.

53) 『屐園遺稿』 卷之七, ○玉局集, 行狀, 「健陵行狀」, "臣等所承命編校 有弘齋全書三集一百卷"

54) 『정조실록』 정조 23년 12월 21일 갑진.

이로 미루어 볼 때 ㉣의 191권과 ㉤의 120권은 동일한 시기의 선사본을 지칭한 것으로 짐작된다. 두 건이 동일한 『홍재전서』라면 실록 기사에서 191권으로 표기한 책을 정조는 왜 120권이라고 기록했을까. 선행 연구에서는 실록 기사의 191권을 신뢰하여 정조가 총권수를 120권으로 혼선을 빚었다고 판단했다.[55] 그러나 실록 기사와 정조가 언급한 191권과 120권은 모두 사실이다.

이 선사본은 수록 내용의 측면에서 기술한다면 191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책의 형태로 본다면 120권으로 장책된 동일한 서책인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문헌 기록에서는 요즘의 챕터를 의미하는 권(篇目)과 볼륨을 가리키는 책(粧册)을 혼용하는 사례가 흔하다. 특히 책의 권을 언급할 때에 볼륨으로서 册數를 지칭한 사례에 유의해야 한다.

㉥은 건릉에 봉안한 120책으로 3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책씩 6함에 담았다. 즉 건릉 봉안건은 앞의 ㉣·㉤과 같은 책수의 『홍재전서』임을 알 수 있다.

㉦은 1801년 12월 11일에 규장각에서 정조의 어제 184권 100책을 완성하여 순조에게 올린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현전하는 183권 100책은 한 권이 차이 나지만 어람건 장황으로 미루어 1801년의 선사본으로 짐작된다.[56]

이상에서 살펴본 『홍재전서』 선사본의 진상 시기와 책수로 볼 때, 건릉에 봉안한 『홍재전서』는 1799년 12월 21일에 진상한 ㉣로 생각된다. 이때에 진상한 두 본 가운데 대내의 장에 두고 정조가 열람했던 『홍재전서』를 내려주어 遺書로서 건릉에 봉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803년 12월 6일에 이교신 初集과 二集, 三集이 내각에 있다고 언급하고, 四集은 지칭하지 않은 것은 혹 이문원에 봉안하였던 『홍재전서』 4集을 건릉에 봉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5) 김문식, 앞의 책, 62면.

56) 김문식, 위의 책, 74면.

5. 19세기 왕릉 봉안 서책과 규장각의 전례

규장각이 주관해 건릉에 서책을 봉안한 사례는 이후 19세기 왕릉 봉안 서책에 대한 전례가 되었다. 규장각은 어제의 편찬과 봉안을 담당한 관서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 이것은 1864년 1월 2일에 규장각에서 철종의 왕릉인 睿陵에 봉안할 서책에 대해 고종에게 품의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국장도감에서 고종에게 초기를 올려 퇴광에 봉안할 서책을 규장각에서 전담하도록 아뢰었다. 고종은 국장도감에서 올린 초기를 규장각에 계하했고, 국장도감의 초기를 받은 규장각은 봉안 서책에 대해 고종에게 다음과 같이 품의했다.[57]

> "지금 국장도감의 초기를 받았습니다. 이번 국장 때에 퇴광에 봉안할 遺書의 권질 구성과 책갑과 궤의 크기 그리고 장황할 冊衣와 보자기에 들어가는 비단을 내각에서 미리 먼저 뜻을 아뢰어 거행하는 사안을 윤허하셨습니다. 삼가 경신년의 규례를 살펴보니 어제와 대내에서 내린 『삼경사서』·『사부수권』을 봉안했습니다. 갑오년과 기유년의 전례에는 단지 어제만을 퇴광에 봉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어제를 선사하는 작업은 하루가 급하니, 대내에 보관한 대행대왕의 어제를 내주시기를 청하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규장각은 먼저 정조·순조·헌종의 전례를 아뢰고 철종의 예릉에는 어떤 책을 봉안할 것인지를 물었다. 다음으로 어제를 봉안한다는 전제하에 대내에 보관한 철종의 어제를 속히 내달라고 청했다. 고종은 1849년에 헌종의 왕릉인 慶陵에 어제만을 봉안했던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명하고 대내의 어제를 내려주겠다고 하교했다.

이것으로 볼 때 철종 생전에 대내의 봉안 장에 있던 어제를 대상으로 퇴광 봉

---

57) 『승정원일기』 고종 1년 1월 2일 갑진, "尹滋承以奎章閣言啓曰 卽接國葬都監草記 則今此國葬時 退壙奉安遺書 卷帙多寡 匣櫝大小 粧衣裹袱 所用緞品 令內閣預先稟旨擧行事 允下矣 謹稽庚申已例 則御製及內下三經四書四部手圈奉安 甲午己酉已例 則只以御製奉安退擴矣 今番何以爲之 而御製繕寫 一時爲急 內藏大行大王御製請出之意 敢啓 傳曰知道 己酉年例爲之 御製當內下矣"

안건의 繕寫 작업이 급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이 주관한 건릉을 전례 삼아 19세기의 왕릉 3기에 봉안한 어제는 〈표 6〉과 같다.[58]

〈표 6〉 19세기 왕릉 봉안 서책

순번	국왕	능호	승하 연(간지)월일	하현궁 일자	퇴광 봉안 서책
1	정조	健陵	1800(庚申).6.28	1800.11.6	弘齋全書 6函 120冊・ 四部手圈 1函 12冊・三經四書 3函50冊
2	순조	仁陵	1834(甲午).11.13	1835.4.19	御製(純齋稿) 1函 10冊
3	헌종	慶陵	1849(己酉).6.6	1849.10.28	御製(元軒稿)
4	철종	睿陵	1863(癸亥).12.8	1864.4.6	御製(中齋稿)

인릉은 순조의 어제인 『純齋稿』 10책을 하나의 회함에 담아 그대로 퇴광에 안치했다.[59] 이 회함은 석회 40두와 법유 3두 7승, 백휴지 1근 50장으로 만들었다. 건릉에서 석함이 아닌 회함을 사용한 전례를 따라 인릉과 경릉에서도 회함을 사용했으나, 규장각이 아닌 국장도감에서 회함을 제작한 것은 건릉과 다른 변화이다.[60] 아마도 봉안할 책이 많지 않아 하나의 회함만을 만들었으므로 국장도감에서 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순조 국장의 발인반차에서 인릉 봉안 서책은 어제궤 채여에 실어 운반되었고, 헌종 국장의 발인반차에서 경릉 봉안 서책은 磁器櫝 채여에 실어 함께 운반되었다. 규장각 검서관이 발인 이전에 서책가자에 실어 운반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19세기 왕릉 봉안 서책은 건릉의 전례를 따르면서도 건릉 이전으로 복귀된 모습도 보인다.

---

58) 순종의 裕陵에는 『正軒集』과 『三經四書』・『文獻備考』・『琬琰通考』을 봉안하라고 명했다. 『순종실록부록』 순종 19년 5월 1일.

59) 『純祖國葬都監儀軌』(奎13669), 「二房儀軌」, '櫝函秩'

60) 『純祖仁陵山陵都監儀軌』(奎13678), 「大浮石所儀軌」, "御製所盛灰函 內高一尺二寸五分 內長一尺三寸五分 內廣九寸一分 體厚蓋厚各二寸 灰函國葬都監造成".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奎2) 大浮石所儀軌, "御製灰函櫝 自國葬都監造成 長一尺三寸 高廣竝一尺一寸"

6. 맺음말

17-18세기의 6기 왕릉에는『국조상례보편』에서 遺書로 지칭한 서책을 전례대로 봉안해왔다. 이 전례는 19세기의 4기 왕릉에도 계승되어 퇴광에 서책을 봉안했다. 그러나 1800년의 건릉에서부터 봉안을 주관하는 관서의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어제의 편찬과 봉안을 직무로 하는 규장각의 출현이다.

본 논문은 건릉에 봉안한 서책과 규장각의 역할을 규명했다. 먼저 정조 국장의 「발인반차도」와 천봉의 「진발반차도」에서 건릉 봉안 서책의 존재에 대해 추적했다. 건릉을 향하는 부장품 채여에는 봉안 서책이 없었으며, 1821년에 건릉을 천봉하는 과정에서 서책가자 3좌를 확인했다. 발인반차의 채여에서 봉안 서책을 볼 수 없었던 것은 규장각 검서관이 발인 전에 능소로 운반했기 때문이었다.

보통 산릉도감의 대부석소에서 퇴광의 석함을 만들기 위해 서책 궤의 수량과 크기를 국장도감에 요청한다. 건릉은 규장각에서 주관해 봉안 서책의 회함과 보자기를 제작했기 때문에 의궤에 기록이 없었다. 이에 먼저 산릉의 「퇴광배설도」를 통해 봉안 서책의 종류를 파악하고 천봉할 때의 의궤를 분석해 회함과 서책의 형태를 고찰했다.

건릉에 봉안한 서책은『삼경사서대전』50책·『사부수권』12책·『홍재전서』120책이다. 본 논문은 이 책들의 현전본과 문헌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봉안 서책의 판본을 살펴보았다. 정조는 갑인년에 정유자로 인출한『삼경사서대전』한 본을 주합루에 보관해 각신에게 잘 지키라고 명했다.『삼경사서대전』은 정조가 왕릉 봉안 서책의 전례를 계승해 자신의 체백과 함께 순장하려고 선택한 책이라는 특징을 지닌다.『사부수권』12책은 1801년에 간인한 25권 12책과 동일한 권질로 구성된 선사본으로 생각된다.『홍재전서』120책은 1799년 12월 21일에 규장각에서 올린 선사본으로 대내에 장에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릉 이전의 17-18세기 왕릉에서는 국장도감에서 주관하고 산릉도감에서 협조해 서책을 봉안했다. 그러나 건릉에서는 어제의 편찬과 봉안이 주요 업무인 규장각이 왕릉의 서책 봉안을 주관했다. 이를 계기로 19세기 왕릉에는 규장각이 봉안

할 어제를 주관하는 것이 전례가 되었다.

이상에서 규명한 조선 후기 왕릉에서의 서책 봉안은 왕세자를 비롯한 왕실 구성원의 園所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왕후의 능에 부장하는 물품 중에 봉안 서책은 존재했을까. 앞으로 이와 같은 의문을 규명하면서 왕릉 봉안 서책의 연구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논문투고일(2020. 5. 16), 심사일(2020. 5. 26), 게재확정일(2020. 6. 11)

참고문헌

1. 자료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奎13586).
『正祖國葬都監儀軌』(奎13634).
『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奎13637).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奎13642).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奎13659).
『純祖國葬都監儀軌』(奎13669).
『純祖仁陵山陵都監儀軌』(奎13678).

2. 연구논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傳 정조대왕 초장지』.
김문식, 2007『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김충현, 2012「孝宗 寧陵의 조성과 陵制의 변화」,『역사문화논총』7.
박성호, 2009「운현궁 도서의 형성 배경과 특징」,『운형궁 생활유물Ⅶ』, 서울역사박물관.
신승운, 2001「『홍재전서』와『군서표기』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서지학연구』22.
신병주, 2017『조선왕실의 왕릉조성』, 세창출판사.
신재훈, 2011「조선 전기 遷陵의 과정과 정치적 성격」,『朝鮮時代史學報』58.
이 욱, 2017『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 애통・존숭・기억의 의례화』, 민속원.
이현진, 2015『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장서각 편찬・김근호 역주, 2019『譯註 健陵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정재훈, 2002「『四部手圈』해제」, 서울대학교규장각.
정해득, 2013『조선 왕릉제도 연구』, 신구문화사.
조계영, 2015「외규장각의 冊寶 봉안과 봉출에 관한 고찰」,『古文書硏究』46.
_____, 2019「조선 후기의 왕릉 봉안 서책과 원릉의 특징」,『한국문화』85.
趙東永, 2010「正祖의『四部手圈』小考」,『韓國漢文學硏究』45.

3. 웹사이트

『내각일력』(http://kyudb.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일성록』(http://e-kyujanggak.snu.ac.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Abstract

Enshrining of Books in Geonneung(健陵) and Roles Played by Kyujanggak

Cho, Gyeyoung *

The precedent custom of enshrining books as grave goods was followed at the royal tombs of the Late Joseon Dynasty.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books enshrined in Wonreung, King Jeongjo himself decided the Janghuang (bookbinding) and the Eojechaeyeo of Balinbancha (royal carriage of the funeral procession). Gukjangdogam (the governmental office for state funeral) and Sanreungdogam (the governmental office of royal tombs) prepared the containers and stone boxes for enshrining books in the royal tombs.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oles played by Kyujanggak in the process of enshrining books in Geonneung. In 1776, King Jeongjo established Kyujanggak as a national library to supervise the publishing and enshrining of King's writings. After the death of King Jeongjo, Kyujanggak prepared the books to be enshrined and limestone boxes for the enshrinement.

Before Geonneung, the books to be enshrined were carried on Chaeyeo (a royal carriage) to Sanreung (a royal tomb located on a mountain) through the funeral procession managed by Gukjangdogam. In the case of Geonneung, the books were carried by Geomseoguan (book examiner) of Kyujanggak to Neungso (site of royal tomb). The books enshrined in Geonneung included Samgyeongsaseodaejeon (Three Books and Four Classics), decided by King Jeongjo when he was alive, as well as Hongjaejeonseo (collection of King Jeongjo's writings) and Sabusugwon (excerpts from Gyeongsajajip favored by King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gjo). In the 19th century, the royal writings were enshrined by Kyujanggak by following the example of Geonneung.

Key words : enshrining, Geonneung, Gyujanggak, Hongjaejeonseo, Sabusugwon Samgyeongsaseodaejeon